#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422

발의연월일: 2025. 2. 25.

발 의 자:김영진·허 영·강유정

임호선 · 서삼석 · 안도걸

소병훈 • 이병진 • 윤후덕

박지원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례를 두고 있는데, 2025년 12월 31일까지 내국법인이 관련 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일정 부분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거나 내국법인이 관련 분야의 외국법인 주식을 취득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 취득가액 또는 인수가액의 일정액을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음.

그런데 수요기업의 요구에 기반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국내의 기술 역량이 부족한 분야에 대한 해외기업의 인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3).

법률 제 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7년 12월 31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 제13조의3(내국법인의 소재・부 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 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①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투자기업"이라 한다)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2027년 12월 31일-----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 장비 관련 중소기업 · 중견기업 (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 업"이라 한다)의 주식 또는 출 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취 득(이하 이 조에서 "공동투자" 라 한다)하는 경우 주식등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 하는 금액을 각 내국법인의 해 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 제하다.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내국법인[외국법인이 대통 (3) -----

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 (이하 이 항에서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인 법인과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 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 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 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어 2 025년 12월 31일까지 국내 산 업 기반, 해외 의존도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 략기술 관련 외국법인(내국법 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 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인수 대상외국법인"이라 한다)의 주 식등을 취득하거나 인수대상외 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또 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사업의 양수 또는 사업의 양수에 준하 는 자산의 양수(이하 이 조에 서 "인수"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인수대상외국법인을 인수할 목적으로 설립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목적 법인(이하 이 조에서 "인수목적법인"이라 한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인수

<u>20</u>
27년 12월 31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식등 취득가액 또는 사업·자산의 양수가액(이하 이 조에서 "인 수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 의 7,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인수건별 인수가액 이 5천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 로 본다.

1. • 2. (생략)

④ ~ ⑧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④ ~ ⑧ (현행과 같음)